



제343회 임시회

2015.10.19.

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회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2015년 10월 02일

○ 회부일자: 2015년 10월 05일

3. 제안이유

여성공무원에게 생리기마다 무급으로 부여하는 매월 1일의 여성보건 휴가를 유급으로 전환하고,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의 태아보호와 장기근속한 공무원의 자기계발 시간 마련 및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여성공무원에게 부여하는 매월 1일의 보건휴가를 유급화함

(안 제19조제2항)

나. 태아보호를 위한 모성보호휴가 5일 신설(안 제19조제3항)

다. 장기근속 지방공무원 재직기간별 특별휴가 신설(안 제19조제7항)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10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라.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의 특별휴가 1일 신설(안 제19조제8항)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공무원의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에서 유급으로 전환하고,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의 태아보호와 장기근속한 공무원의 자기계발 시간 마련 및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여성공무원에게 무급으로 부여하는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유급으로 하도록 하고,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의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5일의 모성보호휴가를 하였던 바, 이는 여성 공무원들의 권익신장과 임산부와 태아의 생명과 건강, 모성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전국현황(여성 생리 보건휴가 1일 유급 부여: 광주, 강원)

※ 전국현황(태아보호를 위한 모성보호휴가 5일 부여: 없음)

○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①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0일 ②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10일 ③ 재직기간 30년 이상은 20일 등 총 4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신설함.

-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전북교육청과 충북교육청을 제외한 15개 시·도교육청에서 장기재직휴가를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바, 본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휴가 일수에 대하여는 타·시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전국현황(17개 시·도교육청)

구 분	0일	10일	15일	20일	25일	30일	40일	45일	50일
기 관	전북	경기	강원	세종 경북	전남	대구, 인천 광주, 울산 충남	경남 제주 충북	서울 대전	부산

○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1일의 특별휴가를 신설하였음.

-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영하는 국민과 그 가족에게 적절한 예우를 하는 동시에, 가족 간 화목 도모와 국가관 확립, 병역이행의 자긍심 고취 등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좋은 취지로, 경기도교육청 및 23개 기초자치단체가 시행 중에 있고, 최근 자녀가 입영하는 경우 부모가 동행하는 것이 우리사회의 보편적인 문화로 인식되고 있는 바, 적절하다고 사료됨.

※ 전국현황(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의 특별휴가 1일 부여: 경기)

관 계 법 령 발 취

□ 지방공무원법[시행 2015.5.18.] [법률 제13292호, 2015.5.18]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시행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 (생 략)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임신·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제7조의3(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 ⑥ (생 략)